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556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조예진(공판)
판 결 선 고 2026.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5. 9. 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C 사이트에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등록상표인 'E'(등록번호 F), G(등록번호 : H)과 동일한 상표로 임의를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저작물인



"I"(등록번호 : J) 및 "K"(등록번호 L)의 각 사진 등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등록한 상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5. 9.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M를 통하여 'N'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며 잡화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O이 식기, 도기, 머그 컵, 머그 컵 소매업 등의 상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상표인 'P'(등록번호 Q, R)을 임의로 사용하여 'S'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등록한 상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장1, 고소장2, 고소장3

1. 각 상표등록원부

1. N M 판매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표권 침해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등록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하여는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주식회사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저작물을 C 사이트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전시·배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6. 4. 27.경 피해자 회사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국인 _____